

○ 一般法官의 任期 및 法官의 停年制

○ 現行: §106 ③④

○ 民正黨: §104 ③④

○ 民主黨: §104 ③④

③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,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.

現行과 같은

③ 大法院長과 大法官 아닌 法官의 任期는 停年까지로 한다.

④ 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.

④ 大法院長의 停年은 70歲로 하고 그밖의 法官의 停年은 65歲로 한다.

○ 一般法官의 任期

一 法官의 任期制는 司法체계의 保守化를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12家에서 채택하고 있으며, 이것이 法官의 身分保障이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法官의 身分保障은 法律에서 連任要件을 규정할 때 충분히 배려할 수 있음

○ 法官의 停年

一 停年은 본이 憲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님